

아프리카국가들과의 FTA 체결시 자원개발 관련 조항 규정 방향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

I. 서론

현재 우리는 7개 FTA¹⁾를 발효시켰으며, 한-미 FTA 비준절차를 밟고 있고, 7개 FTA²⁾를 협상 중에 있다. 이밖에도 10개 FTA³⁾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중이거나 협상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아직 본격적으로 아프리카국가들과 FTA를 추진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 남아공과 FTA 민간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원에너지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조만간 아프리카의 주요국가들을 상대로 FTA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아프리카국가들과의 FTA에서는 아프리카 경제 발전 수준을 감안하여 상품과 서비스 개방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의 개방을 용인하더라도, 투자나 자원에너지 부문에 있어서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실질적인 협력을 규정하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 추진시 자원에너지 부문의 협력과 제도적 투자보장 방안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대 아프리카 자원에너지개발 진출을 위한 제도보장 방안을 정부측에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 협상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FTA에

1)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와의 FTA.

2) 캐나다,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터키와의 FTA.

3) 일본, 중국, 한-중-일, MERCOSUR, 이스라엘, 베트남, 몽골, 중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의 FTA.

서의 자원개발 관련 조항을 바탕으로 우리기업들의 대아프리카 자원개발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FTA에서의 해외자원에너지협력 관련 규정 현황을 살펴보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로 EU측과 체결한 경제협력 협정상의 유사한 조항을 분석한 후, 한-아프리카 FTA에 포함시킬 수 있는 자원개발관련 조항의 내용을 도출하기로 한다.

II. FTA 해외자원에너지협력 관련 규정

1.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의 규정

가. 한-싱가폴 FTA

한-싱가폴 FTA에서는 에너지 협력관련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당사국은 각국의 경제에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에너지 분야의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증진해야 한다.”⁴⁾ 이러한 협력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 (i) 당사국의 민간부문간에 석유와 가스 개발을 위한 협력 증진,
- (ii) 당사국의 연구기관과 대학교간 공동 R&D 프로젝트에 참여할 목적의 협력을 촉진,
- (iii) 이행당국간의 합의에 의해 연구방문이나 기타 방식에 의해 전기나 가스 재건(restructuring) 부문 정보와 경험을 공유⁵⁾

4) 한-싱가폴 FTA 제18.2조.

“Article 18.12: Energy

1. The Parties, recognising the importance of energy in the respective economies, shall develop and promote co-operative activities in the field of energy.”

5) Ibid., 제2항.

“The co-operation may include the following forms:

(a) facilitation of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sectors of both Parties for the purpose of oil/gas exploration;

(b) facilitation of co-operation between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of both Parties

나. 한-아세안 FTA

한-아세안 FTA에서는 경제협력장(Chapter 3 Economic Cooperation)에 ‘협력의 범위와 이행’ 조항을 두고 상호 이익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에너지, 광업, 천연자원 등의 부문에서 협력사업을 마련하여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⁶⁾ 이러한 사업은 실현가능하고 상호 합의하는 기간에 수행하며, 효과적인 이행여부를 이행위원회(Implementing Committee)가 감독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은 경제협력에 관한 부속서(Annex on Economic Cooperation)에 규정되어 있다. 우선, 광업에 대해서는 당사국들은 광업

for the purpose of engaging in joint R&D projects; and
 (c) exchange of information and sharing experiences in the fields of electricity and gas restructuring efforts, through study visits or such other activities as mutually agreed upon by the implementing authorities.”

6) 한-아세안 FTA 제3.1조.

“Article 3.1 Scope and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1. The Parties, on the basis of mutual benefits, shall explore and undertake cooperation projects in the following areas:

- (a) customs procedures;
- (b)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 (c)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d)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development;
- (e) tourism;
- (f) science and technology;
- (g) financial services;
- (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i) agriculture, fisheries, livestock, plantation commodities and forestry;
- (j) intellectual property;
- (k) environmental industry;
- (l) broadcasting;
- (m) construction technology;
- (n)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and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o) mining;
- (p) energy;
- (q) natural resources;
- (r) shipbuilding and maritime transport; and
- (s) film.”

부문에서의 협력이 경제발전이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아래 사항들을 약속하였다.

- (i)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공동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고, 에너지 및 광물 매장량에 대한 탐사 및 채취, 광업 부산물 처분, 그리고 폐광의 재활용에 관한 기술의 증진에 대하여 협력한다.
- (ii) 광업부문에 대한 무역 및 투자의 촉진을 장려한다.
- (iii) 광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최적 활용에 있어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광물개발 관행의 증진에 대하여 협력한다.
- (iv) 광업 정책 및 기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보 교환을 장려한다.
- (v) 민간부문간의 사업 제휴를 증진하고 개발한다. 그리고
- (vi) 광업의 발전 및 증진을 목표로 훈련·세미나·워크숍 및 전문가 교류를 수행한다.⁷⁾

둘째, 에너지에 대해서는 당사국들은 급속한 경제발전속도를 고려할 때 미래에 당사국들의 영토내에서 에너지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아래에 합의했다.

- (i)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증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 (ii) 압축천연가스기술 및 정책과 같은,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은 대체 및 재생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협력한다.
- (iii) 기반시설 개발, 자원 개발, 투자 촉진 및 새로운 에너지 절약 기술

7)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에 관한 부속서 제15조.

"Article 15 Mining

The Parties, recognising that cooperation in the mining sector will contribut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shall:

- (a) explore possibilities for the joint development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and cooperate in the improvement of technology on exploration and extraction of energy and mineral deposits, mine waste disposal and rehabilitation of closed mines;
- (b) encourage enhancement of trade and investment in the mining sector;
- (c) cooperate in the promotion of environmentally sound and socially responsible mineral development practices in sustainable management and optimum utilisation of mineral resources;
- (d) encourage exchange of information on issues related to the mining policy and technology;
- (e) promote and develop business alliances between the private sectors; and
- (f) conduct trainings, seminars, workshops and exchange of experts geared towards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mining."

의 적용에 있어 협력한다.

(iv) 전문가 교류를 장려한다. 그리고

(v) 민간부문 간의 사업 제휴를 증진하고 개발한다.⁸⁾

셋째, 천연자원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당사국들은 천연자원의 적절한 관리 및 효율적 이용이 당사국 각국 경제의 지속적인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다음에서 협력한다.

(i) 지하수 격납 및 운송을 모의실험하고 예측하는 적절한 수학적 모델의 개발 및 활용, 폐기물 저장/처분과 농공업 활동이 지하수질에 미치는 위험의 평가, 그리고 지하수 보호지역의 설정

(ii) 에너지 및 광물 매장량에 대한 탐사·채취 및 활용, 광업 폐기물 처분, 그리고 폐광의 재활용에 관한 기술의 향상

(iii) 투자 촉진 활동. 그리고

(iv) 지하수 및 지표수를 포함한 수자원의 종합관리, 그리고 이 분야에서의 정보기술의 적용⁹⁾

8) Ibid., 제16조.

"Article 16 Energy

The Parties, recognising that energy demand in their territories, shall expand in the future given the rapid pace of economic development, shall:

(a) exchange information on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in energy use;
 (b) cooperate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alternative and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but not limited to, compressed natural gas technology and policy;
 (c) cooperate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 resource development, investment promotion and application of new energy saving technologies;
 (d) encourage exchange of experts; and
 (e) promote and develop business alliances between the private sectors."

9) Ibid., 제17조.

"Article 17 Natural Resources

The Parties, recognising that proper management and efficient utilisation of natural resources will contribute to the continued expansion of their respective economies, shall cooperate in:

(a) development and utilisation of appropriate mathematical models to simulate and predict groundwater containment and transport, assessment of risk posed by waste storage/disposal and agro-industrial activities on groundwater quality, and setting-up of groundwater protection zones;
 (b) improvement of technology on exploration, extraction and utilisation of energy and mineral deposits, mine waste disposal and rehabilitation of closed mines;
 (c) investment promotion activities; and

다. 한-인도 CEPA

한-인도 CEPA에서는 양 당사국이 자국 경제에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활동을 개발하고 증진하며, 이러한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i)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탐사를 목적으로 양 당사국의 공공 및 민간부문간 협력의 촉진
- (ii) 원유의 전략적 비축·에너지 절약 및 대체연료개발 분야에서 양 당사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간 협력의 촉진
- (iii)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 양 당사국의 연구소 및 대학간 협력의 촉진¹⁰⁾

또한, 재생에너지자원에 대한 협력 규정도 두어, 양 당사국이 자국의 경제에서 재생에너지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태양력·풍력·바이오 에너지 및 상호 합의한 그 밖의 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기술의 연구·고안 및 개발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다음의 형태를 포함한다.

- (i) 정책 및 기술적인 정보의 교환
- (ii) 과학자·정책입안자 및 그 밖의 전문가를 포함한 인적 교류
- (iii) 공동세미나, 워크숍 등의 개최

(d) comprehensive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cluding ground and surface water, and the applic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is area.”

10) 한-인도 CEPA 제13.2조.

“ARTICLE 13.2: ENERGY

1. The Parties, recognising the importance of energy in their respective economies, shall develop and promote cooperative activities in the field of energy.
2. The cooper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forms:
 - (a) facilitation of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of both Parties for the purpose of oil, gas and mineral resources exploration;
 - (b) facilitation of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of both Parties in the field of strategic storage of crude oil, energy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of alternative fuels; and
 - (c) facilitation of cooperation between research institutes and universities of both Parties, including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v)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증진

(v) 투자 및 합작 사업의 촉진

이러한 협력활동의 비용 및 지적재산권의 공유는 상호 합의에 따라 사례 별로 또는 프로젝트 별로 이루어질 수 있다.¹¹⁾

라. 한-페루 FTA

한-페루 FTA에서는 에너지와 광물자원 분야 협력 규정을 두고 양 당사국이 에너지·광물 자원 분야에서 더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호혜적인 제휴관계 구축의 수단으로서 협력을 증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광물 자원 협력의 분야는 다음을 포함한다.

(i) 원유와 가스의 탐사, 채굴 및 생산과 같은 상류부분 활동

(ii) 원유 정제, 석유화학 공정, 가스의 액화, 원유 및 석유제품의 운송 및 유통과 같은 하류부분 활동

(iii) 광물자원의 탐사, 채굴, 생산, 제련, 정제, 가공, 운송 및 유통과 같은 활동

(iv) 광업 활동과 관련하여 양 당사국 영역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측량, 채굴 및 환경·지질학적 활동에 적용되는 지도 제작 활동(측지학, 위성사진, 원격 감지 및 지리정보 시스템)

(v) 광업 관련 환경적 책임의 복구를 위한 광업 기술의 교환

(vi) 광업의 환경적 문제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

11) 한-인도 CEPA 제13.13조.

"ARTICLE 13.13: RENEWABLE ENERGY RESOURCES

1. The Parties, recognising the importance of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resources in their respective economies, agree to cooperate in research, design and development of various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including solar, wind, bioenergy, and others as mutually agreed.

2. The cooperation pursuant to paragraph 1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forms:

(a) exchange of policy and technical information;

(b) exchange of personnel including scientists, policy makers, and other experts;

(c) organisation of joint seminars, workshops, etc.;

(d) promoting joint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nd

(e) facilitating investments and joint ventures.

3. The sharing of cos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ld be as mutually agreed on a case to case or project to project basis."

12 PART. 1 아프리카의 자원개발 관련법제

- (vii) 양 당사국간 에너지·광물 자원 협력에 대한 사업 관계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활동
- (viii)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분야¹²⁾

또한, 양 당사국은 에너지·광물 자원 분야에서 다음 주제에 대해 대중에게 자유롭게 공개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 (i) 국내 및 외국 기업을 위한 투자 현황 자료
- (ii) 입찰 및 채굴사업과 같은 투자 기회
- (iii) 지질 자료/정보
- (iv) 관련 법, 규정 및 정책
- (v) 광해방지기술 및 광산 개발 과정에서 개발자와 지역 주민 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사안¹³⁾

12) 한-페루 FTA 제20.8조.

"ARTICLE 20.8: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COOPERATION

1. The Parties shall promote cooperation under this Chapter as a means of building a stronger, more stable, and mutually beneficial partnership in the field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2. Areas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cooperation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 (a) upstream activities such as the exploration, exploitation, and production of oil and gas;
- (b) downstream activities such as the refining of oil, processing of petrochemicals, liquefaction of gas, and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of crude oil and oil products;
- (c) activities such as the exploration, exploitation, production, smelting, refining, processing,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of mineral resources;
- (d) cartographic activities (geodesy, satellite images, remote sensing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applied to cadastral, mining, and environmental and geological activities required for an efficient use and administration of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related to mining activities;
- (e) exchange of mining technology for remediation of mining-related environmental liabilities;
- (f) exchange of information and experiences on environmental issu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mining;
- (g) activities for encouraging and facilitating the business relations regarding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 (h) any other areas as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13) Ibid, 제3항.

"3. The Parties shall facilitate the exchange of information freely available to public on the following subjects in the field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 (a) current investment data for domestic and foreign enterprises;

아울러, 각 당사국은 에너지·광물 자원에 대한 자국의 법과 규정이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되도록 보장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에너지·광물 자원에 관한 협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규정을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그 규정에 대해 이전에 통지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에너지·광물 자원 협력에 대한 규정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질의에 답변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모든 통보 또는 정보는 그 조치가 FTA에 합치하는지와 무관하다.¹⁴⁾

양 당사국은 에너지·광물 자원 분야에 관여하는 자국 정부기관, 공공조직, 연구소, 대학 및 기업을 통해 양 당사국의 공공 및 민간 분야 간 협력을 증진하며, 안정적이고 호혜적인 양자관계를 위해, 에너지·광물 자원 분야의 투자를 포함한 플랜트 건설과 관련된 사업 기회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그리고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 공동위원회와 같이 이미 조직된 협력체와 협정에 관련된 활동을 인정하고 촉진한다. 양 당사국은 연구자, 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의 방문 및 교류를 촉진하며 또한 공동 포럼, 세미나, 학술 토론회, 학회, 전시회 및 연구 사업을 증진한다.¹⁵⁾

(b) investment opportunities such as tenders and mining projects;
 (c) geological data/information;
 (d) relevant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and
 (e) mine reclamation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ssues that could arise between the developers and the local people in the process of mine development.”

14) Ibid., 제4, 5, 6, 7항.

“4.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are published or otherwise made publicly available.

5. To the extent possible, each Party shall inform the other Party, in advance, of any provision that the Party considers might substantially affect cooperation i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6. Upon request of the other Party, a Party shall promptly provide information and respond to questions pertaining to any provision regarding cooperation i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regardless of whether the other Party has been previously informed of the provision.

7. Any notification or information provided under paragraphs 5 and 6 shall be without prejudice as to whether the measure is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15) Ibid., 제8, 9항.

2. 아프리카 국가들이 EU와 체결한 FTA에서의 규정

가. EU - 남아공 협력협정

EU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체결한 경제개발협력협정¹⁶⁾에는 경제협력편(TITLE IV. Economic Cooperation)에 에너지협력과 광물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조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우선 에너지 분야 협력과 관련, (i) 남아공으로 하여금 에너지에 대한 수용가능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한 접근을 개선하고, (ii) 에너지 생산, 보급 및 소비부문을 개편하고 근대화하여 경제효율성, 사회발전 및 환경수용성에 비추어 적절한 서비스를 최선의 조건하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며, (iii) 남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 간에 지역에너지자원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협력을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¹⁷⁾

“8. The Parties shall:

(a)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he Parties, through their government bodies, public organizations, research centers, universities, and enterprises engaged in the field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b) encourage and support business opportunities, including investment, related to plant construction in the field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for a stable and mutually beneficial bilateral relationship; and

(c) recognize and facilitate activities related to agreements and cooperation entities that have already been organized, such as the Joint Committee on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Cooperation.

9. The Parties shall facilitate visits and exchanges of researchers, technicians, and other experts, and shall also promote joint fora, seminars, symposia, conferences, exhibitions, and research projects.”

16) Agreement on 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of the other part (4.12.1998), L 311/5).

17) Ibid., 제57조 1항.

“Article 57 Energy

1. Cooperation in this area shall include the aim of cooperation in this area shall be:

(a) to improve the access of South Africans to affordable, reliable and sustainable sources of energy;

(b) to reorganise and modernise the energy producing, distributing and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목표로는 (i) 남아공 내에서의 적절한 에너지정책과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을 지원하고, (ii) 남아공에서의 에너지공급을 다원화하며, (iii) 특히 전기와 액체연료부문에서의 기술, 경제 및 금융조건에 있어서의 에너지공급자의 운영기준을 개선시키며, (iv) 일반훈련 또는 기술훈련을 통해 지역 전문성을 제고시키며, (v) 신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농촌지역의 에너지전력공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vi) 에너지체계의 효율성 증진에 특히 노력하여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증진시키며, (vii) 환경 친화적 기술의 이전과 사용을 증진하며, (viii) 남아프리카 지역의 지역에너지 협력을 증진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¹⁸⁾

아울러, 광업 및 광물자원 개발에 있어서의 협력목표를 별도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i) 광업의 보건 및 안전기준과 고용조건을 개선하는 정책적 조치를 지원하고 증진하며,
- (ii) 광물자원과 지리과학의 정보를 개발과 광업투자에 가용하도록 제공하는 한편,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투자를 유도하기에 호혜적인 환경을 창출하고,

consuming subsectors so that appropriate services are provided on optimum terms of economic efficiency, soc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acceptability;
 (c) to support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n the southern African region to exploit locally available energy resources in an efficient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manner.”

18) Ibid., 제2항.

“2. Cooperation shall specifically aim:

- (a)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energy policies and infrastructure in South Africa;
- (b) to diversify energy supplies in South Africa;
- (c) to improve energy operators performance standards in technical, economic and financial terms especially in the electricity and liquid fuels sectors;
- (d) to facilitate capacity building of local expertise especially by general and technical training;
- (e) to develop new and renewable forms of energy and support infrastructure especially for rural energy power supply;
- (f) to improve the rational use of energy notably by the promotion of energy systems’ efficiency;
- (g) to promote transfer and use of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 (h) to promote regional energy cooperation in southern Africa.”

- (iii) 광업활동이 특정한 지역상황과 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 (iv) 광업과 광물자원 분야의 기술연구와 개발에 협력한다.
- (v) 이러한 협력사업은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광업협력체의 제도적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남아프리카 협력사업들을 포함한다.¹⁹⁾

나. EU - 알제리 협력협정

EU-알제리 협력협정²⁰⁾에도 에너지와 광업부문의 협력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우선, 에너지와 광업부문의 협력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 (i) 협력사업 규제와 투자 증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입법 및 규제수준 제고,
- (ii) 에너지와 광업기업들을 시장경제와 경쟁체제에 적합하도록 준비시키고 기술력을 제고,
- (iii) 에너지와 광업부문에 있어 탐사, 생산, 가공, 유통 및 서비스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유럽과 알제리회사들 사이에 파트너쉽을 발전²¹⁾

19) Ibid., 제58조.

"Article 58 Mining and minerals

1. The aim of cooperation in this area is, inter alia:

- (a) to support and promote policy measures that improve health and safety standards in the mining industry as well as conditions of employment;
- (b) to make mineral resources and geoscience information accessible for exploration and mining investment. The cooperation should also create a mutually beneficial climate for attracting investment in the sector, including SMEs (and previously disadvantaged communities);
- (c) to support policies which ensure that mining activities take place with due consideration for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 circumstances in the country and nature of mining;
- (d) to cooperate on mining and minerals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2. Cooperation will include South African activities undertake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Mining Coordination Unit."

20) Euro-Mediterranean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People's Democratic Republic of Algeria, of the other part (10.10.2005, L 265/2).

21) Ibid., 제61조.

"Article 61 Energy and mining

The aims of cooperation in the energy and mining sectors shall be:

- (a) institutional, legislative and regulatory upgrading to ensure that activities are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협력 분야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 (i) 에너지와 광업분야에서 제도, 입법 및 규제 틀을 기술, 행정 및 규제 지원을 통해 시장경제규범에 적응시키고,
- (ii) 에너지와 광업부문에 공공기업을 재구성하는 노력을 지원하며,
- (iii) 석유와 가스 탐사, 생산 및 가공, 전기생산, 석유제품 유통, 에너지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와 서비스의 생산, 광업의 잠재력 개발 및 전환 등의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 (iii) 가스, 석유 및 전기 보급을 증진하며,
- (iv) 에너지 네트워크의 현대화와 개발, EC네트워크와의 연결을 지원하고,
- (v) 광업과 에너지 부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 (vi) 에너지와 광업부문 활동을 지원하고 증진시키며,
- (vii) 에너지와 광업활동에 민간부문 투자를 지원하고 증진시키고,
- (viii) 환경,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 분야에서 협력하고,
- (ix) 에너지와 광업분야에서 기술이전을 증진한다.²²⁾

regulated and investment promoted;

- (b) technical and technological upgrading to prepare energy and mining companies for the requirements of the market economy and competition;
- (c) the development of partnerships between European and Algerian companies in the activities of exploration, production, processing, distribution and services in the energy and mining sectors.

22) Ibid.,

"The priority areas of cooperation in this respect shall be:

- adaptation of the institutional, legislative and regulatory framework of activities in the energy and mining sectors to market economy rules by means of technical, administrative and regulatory assistance,
- support for efforts to restructure public enterprises in the energy and mining sectors,
- building partnerships in the areas of,
- oil and gas exploration, production and processing
- electricity production,
- distribution of petroleum products,
- production of equipment and services used in the production of energy products,
- developing and transforming the potential of mining,
- development of gas, oil and electricity distribution,
- support for the modernisation and development of energy networks and for their linking to European Community networks,
- the setting-up of databases on the mining and energy sectors,
- the support and promotion of private investment in energy and mining sector activities,
- the environment,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ies and energy efficiency,
- the promotion of technology transfers in the energy and mining sectors.

다. EU-모로코 협력협정, EU-튀니지 협력협정, EU-이집트 협력협정

EU-모로코 협력협정²³⁾, EU-튀니지 협력협정²⁴⁾ 및 EU-이집트 협력협정²⁵⁾은 공통적으로 경제협력 부문에 간단한 조항을 두어 에너지부문의 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즉, 양국간의 협력사업의 중점분야로서, (i) 재생가능에너지, (ii) 에너지 절약의 증진, (iii) 양 당사자간의 경제와 사회부문 정책운영자들을 연결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에 관한 실용연구, (iv) 에너지 네트워크를 현대화하고 개발하거나 이러한 네트워크를 EC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노력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들고 있다.²⁶⁾

23) Euro-Mediterranean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Kingdom of Morocco, of the other part (18.3.2000, L 70/2).

24) Euro-Mediterranean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Republic of Tunisia, of the other part (30.3.98, L 97/2).

25) Euro-Mediterranean Agreement establishing an association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ies and their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Arab Republic of Egypt, of the other part.

26) EU-모로코 협력협정 제57조, EU-튀니지 협력협정 제57조.

"Article 57 Energy

Cooperation shall focus on:

- (a) renewable energy;
- (b) promoting the saving of energy;
- (c) applied research relating to networks of databases linking the two Parties' economic and social operators;
- (d) backing efforts to modernise and develop energy networks and the interconnection of such networks with Community networks."

EU-이집트 협력협정 제53조.

"ARTICLE 53 Energy

The priority areas of cooperation shall be:

-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ies;
- the promotion of energy-saving and energy efficiency;
- applied research into data bank networks in the economic and social sectors, linking Community and Egyptian operators in particular;
- support for the modernisation and development of energy networks and for their linking to European Community networks."

다. EU - 카메룬 협력협정

EU-카메룬 협력협정²⁷⁾에서는 “개발을 위한 파트너쉽 편(Title II Partnership for Development)”을 두고 능력형성과 현대화를 위한 우선 분야중 하나로서 ‘기존 지역인프라 개발’을 지목하고 ‘운송, 에너지 및 통신’을 그 세부분야로 규정하고 있다.²⁸⁾ 이러한 분야 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 개발금융협력(development finance cooperation)에 의한 생산분야의 현대화 작업을 진행할 것을 확인하고 있다. 즉, 유럽개발기금(European Development Fund)의 프로그래밍절차와 EU의 일반예산에 의해 금융 지원을 하며, 각종 원조정책과 보조를 맞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²⁹⁾

기타 EU가 코트디부와르와 맺은 경제파트너쉽협정³⁰⁾ 등에는 자원에너지 분야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다.

3.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각각 맺은 FTA에서의 자원에너지 협력 규정 비교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맺은 FTA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맺은 FTA에서는 모두 협력(cooperation) 조항에서 협력의무를 규정하는 형식으로 자원에너지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세부적

27) Interim Agreement with a view to 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ne part, and the Central Africa Party, of the other part (28.2.2009, L 57/2).

28) Ibid, 제5조.

“Article 5 Priority areas for capacity building and modernisation

1. The Central African Party, in partnership with the EC Party and by means of the cooperation instruments set out in Article 7, shall promote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crease in the goods and services produced and exported by the Central African region, particularly in the following areas:

(a) Development of basic regional infrastructure

– Transport

– Energy

– Telecommunications“

29) Ibid, 제7조.

30) Stepping Ston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Cote d'Ivoire, of the one part, and the European Community and its Member States, of the other part (3.3.2009, L 59/3).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우리가 맺은 FTA에서는 협력 가능 분야를 나열하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EU와 맺은 협력협정에서는 우선 협력의 목적을 명시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차원에서 협력 분야를 기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즉, 남아공-EU 협정의 경우는 남아공의 에너지에 대한 접근 개선, 관련 산업부문 현대화, 지역국가들 간의 협력 증진, 보건 및 안전기준과 고용조건 개선, 투자 유도 위한 호혜적 환경 조성 등이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며, 알제리-EU 협정의 경우는 투자 증진 보장, 시장경제 준비, 유럽회사들과의 파트너쉽 발전 등이 목표로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투자대상지역인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원에너지 조건 개선과 현지산업 현대화와 같은 목표를 명시하고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사업들을 규정한 것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외부국가들에 의해 자원에너지가 수탈된 경험을 반영한 것이라 이해된다. 즉, 현지 여건 개선과 산업 개발 없이, 에너지자원을 밖으로 유출하기 위한 개발체제의 성립을 근본적으로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맺은 FTA에서의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조항에도 현지의 에너지 접근성 개선, 관련 산업부문 현대화, 보건·안전·고용조건 개선, 호혜적 투자환경 조성 등의 협력사업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차원에서 각종 협력사업을 전개할 것임을 규정하는 식으로 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적어도 우리 기업들이 달성하려는 목표인 에너지 공급선의 확보와 현지 투자기업들의 보호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향하는 위와 같은 목표들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협력의 목적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구체적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맺은 FTA에서는 주로 석유와 가스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협력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데 비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맺은 FTA에서는 현지의 인프라 구축, 데이터 베이스 구축, 현지 인력 훈련, 기술이전 등의 협력사업 위주로 되어 있다. 특히

1. 아프리카국가들과의 FTA 체결시 자원개발 관련 조항 규정 방향 21

알제리-EU 협정의 경우, 에너지와 광업분야에서의 제도, 입법 및 규제의 틀을 구축하여 시장경제규범에 적응시키고 공공기업을 재구축하는 노력을 지원하는 등 현지 체제 구축이 우선협약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맺는 FTA에서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사업들을 규정하는 경우, 적어도 우리측이 우선시하는 사업들인 석유와 가스 공동개발, 무역 및 투자 촉진, 민간부분간의 제휴활성화 등을 협력사업으로 명시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우선협력분야인 인프라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지 인력 훈련, 입법 지원 등을 상당히 수용해주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미 서구자본이 많이 진출해서 투자와 교역여건이 상당히 발전해있는 여타 지역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투자와 고용효과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기여 간의 균형관계만을 고려한 단기적 투자전략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으나, 아프리카에 자원개발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체제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면서 투자의 과실을 장기적으로 취하는 장기 전략이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보여주고 있다.

III.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에서의 자원개발 관련 투자 조항 구성방안

1. 투자의 정의

그동안 우리가 맺은 FTA의 투자 장(chapter)에서 “투자(investment)”의 정의는 매우 포괄적으로 내려져있다. 예를 들어 한-칠레 FTA에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을 예시하고 있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 및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참여,

다. 채권, 회사채, 대부 및 그 밖의 기업의 차입수단,

라. 터키, 건설, 경영, 생산, 양허 또는 수익배분 계약을 포함한 계약상의 권리,

마. 상업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성립되거나 유지되는 금전에 대한 청구권,

바. 지적재산권,

사. 국내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창출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양허·면허·인가 및 허가와 같이 국내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아. 그 밖의 유·무형 자산, 동산·부동산 및 임차권, 지당권, 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관련 재산권.

그러나 다음은 투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자. 전적으로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 청구

(1) 일방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공민이나 기업이 타방 당사국의 영역 내의 기업에 대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상업 계약, 또는

(2) 무역금융과 같이 상업적 거래와 관련된 신용의 제공, 그리고

차. 사업 또는 행정 소송 상태에 들어간 주문.

이러한 정의 규정은 다른 FTA에서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³¹⁾ 이러한 FTA에서의 투자의 정의는 기업자산, 재산권, 회사채, 지재권, 영업권, 허가권 등 광범위한 부분을 투자의 정의로 포함하고 있어,

31) 한-인도 CEPA 제10.1조 참조. 한편, 한-EU FTA에서는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을 두는 대신, 투자체 “선립”(establishment)에 대한 제한적 규정만을 두고 있다. 한-EU FTA 7.9 참조.

대체로 양자 투자보장협정상의 그것과 일치하고 있다. 다만, 양자 투자협정에서는 “투자”에 대한 정의를 물권적 재산권, 회사에 대한 참여권, 경제적 청구권, 지식재산권, 자연자원 관련 권리 등 5개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모로코 투자보장협정에 따르면, “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투자의 일반성을 제약하지 아니하며, “투자”에는 특히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가. 동산·부동산·지당권·유치권·질권·용익권·리스 및 이와 유사한 권리 등 기타 재산권
- 나. 회사의 지분·주식·사채 및 기타 모든 형태의 회사 또는 기업에의 참여
- 다. 금전청구권 또는 투자와 관련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행위에 대한 청구권
- 라. 저작권·상표권·특허권·산업설계·기술공정·노하우·영업비밀 및 상호권 등을 포함한 지식재산권과 영업신용
- 마. 투자와 관련하여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추출 및 개발에 대한 허가 등 면허나 허가와 관련하여 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된 모든 권리. 투자된 자산 형태의 어떠한 변경도 동 자산이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³²⁾

이처럼 양자 투자협정에서는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투자의 정의로 확실히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FTA에서는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추출 양허권”을 특정하지 않고, “양허·면허·인가 및 허가와 같이 국내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라는 포괄적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물론, 천연자원 개발권도 “국내법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양허·면허·인가 및 허가”이므로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FTA 투자규정의 해석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양자 투자협정에서의 투자의 정의 조항처럼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추출 양허권”을 별도로 명시하여 아프

32) 한국-우크라이나 투자협정, 한국-리비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한국-인도네시아 투자보장협정, 한국-인도 투자보장협정, 한국-모로코 투자협정 등도 대동소이하다.

리카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확실하게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보호하는 방법일 것이다.

2. 비차별대우 의무

일반적으로 FTA 투자의 장은 내국민대우 의무와 더불어 최혜국대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최혜국대우가 규정되게 되면, 우리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우리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제3국의 투자에 부여하는 경우, 우리는 최혜국대우 위반을 들어 최소한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한-싱가폴 및 한-인도 FTA를 제외하고 그동안 우리가 체결한 FTA에서도 최혜국대우 의무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FTA하에서 최혜국대우는 투자 체의 설립 후 단계는 물론이고 설립 전 단계(허가, 설립, 인수)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투자보장협정에서 일반적으로 투자의 “관리, 사용, 유지, 향유 또는 처분”을 보호대상으로 규정하여, 설립 후 단계만을 보호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다. 특히, 한-ASEAN FTA에서는 “허가(admissions)” 단계까지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³³⁾ 이 단계부터 최혜국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 투자자 및 투자체는 가급적 투자의 설립 전 단계까지 협정상의 최혜국대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협상해나가야 한다.

최혜국대우 의무를 규정하더라도 무한정 이러한 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협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 최혜국대우 의무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한-아세안 FTA인 바, 아래와 같은 특혜 대우는 최혜국대우 의무로부터 배제하고 있다.

(i) 어떠한 기존의 양자·지역 및/또는 국제협정, 또는 비당사국과의 모든 형태의 경제적 또는 지역적 협력에 따라 투자자 및/또는 그들의 투자에 부여되는 특혜적 대우,

33)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제4조.

- (ii)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양자간의 또는 다자간의 모든 협정 또는 약정에서 투자자 및/또는 그들의 투자에 부여된 모든 기존 또는 미래의 특혜적 대우,
- (iii) 당사국이 당사자인 미래의 협정 또는 약정에 의하여 그 밖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에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대우를 상기 그 밖의 당사국을 제외한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에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기 그 밖의 당사국을 제외한 그 밖의 당사국의 요청 시, 당사국은 거기에 부여된 혜택을 협상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³⁴⁾

이것은 기존에 맺은 모든 협정상의 특혜와 앞으로 맺는 모든 협정상의 특혜를 모두 최혜국대우 의무의 적용으로부터 배제하고, 아세안 회원국들간에 맺은 특혜도 배제시킴으로써, 사실상 거의 모든 사항에 대해 최혜국대우 의무를 배제시킨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과세조치도 투자협정의 적용대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³⁵⁾ 이중과세 회피조치나 기타 과세관련 약정에 의한 특혜부여에 대해서도 최혜국대우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한-아세안 FTA에서는 투자분야의 최혜국대우 의무 조항을 도입하기는 했으나,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배제조항을 함으로써 인해 사실상 이러한 의무가 적용되는 경우를 없애고 있는 셈이다.

한-모로코 투자보장협정의 경우는 이렇게 최혜국대우 의무의 적용이 제한되는 종류의 협정을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공동역외관세지역, 공동시장, 통화동맹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이나 기타 형태의 지역협력”과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현재 또는 미래의 협약 또는 국제약정”이라 표현하고 있다.³⁶⁾ 즉, 반드시 이중과세 회피 협정이 아니더라도 “주로 조세문제와 관련된 협정”이라면, 그에 따라 제3국에 부여한 특혜에 대해서는 한국과 모로코가 각각 최혜국대우 의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리비아와의 투자보장협정에서는 “경제·관세동맹, 면세지역, 공동시장,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이나 지역경제기구” 혹은

34)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제4조 3항, 4항.

35)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제2조 2항 (단, 송금 및 수용보상 조항은 적용).

36) 한-모로코 투자보장협정 제3조 3항.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조세제도와 관련된 국제협정 또는 협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³⁷⁾ 즉, “면세지역”에 관하여 제3국에 부여한 특혜에 대해서도 최혜국대우 의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를 맺는 경우, 투자의 최혜국대우 의무에서 배제되는 범위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는 이미 미국, EU 등과의 FTA를 통해 높은 수준의 투자보장을 약속한 바가 있으므로, 이러한 특혜들이 자동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부여한 특혜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 의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배제사유는 모로코와 리비아와의 투자보장협정상의 배제 사유를 참고하여 규정해야 할 것이다.

3. 송금의 자유

한-모로코 투자보장협정에서는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과 관련된 지급액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송금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손실 보상금, 수용보상금 및 기타 배상금, 투자의 처분 또는 전면적·부분적 정산으로 인한 수익금, 투자와 관련된 차관의 상환자금, 기존 투자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추가금액, 투자와 관련하여 자국의 영역 안에서 근로허가를 받은 타방채약당사자의 국민의 소득” 등이 있다. 송금은 “당해 거래에 유효한 환율에 의하여 부당한 지체 없이 자유태환성 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³⁸⁾ 한-리비아 투자보장협정도 대체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³⁹⁾

우리가 체결한 FTA에서도 투자 송금의 보장조항을 두고 있다. 한-아세안 FTA는 원칙적으로 투자자의 본국 송금의 자유를 규정하고 그 한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각 당사국은 적용대상투자에 관한 송금이 송금의 시점에 자국 영역에서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자유사용가능

37) 한-리비아 투자보장협정 제3조 3항.

38) 한-모로코 투자보장협정 제6조.

39) 한-리비아 투자보장협정 제6조.

통화로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게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 (i) 초기 자본 및 투자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분
- (ii) 이윤·배당금·이자·자본이득·사용료지불·면허비·기술지원비·경영지도비 및 적용대상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경상수입
- (iii)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 또는 청산에 따른 대금
- (iv) 대부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
- (v) 제12조(수용 및 보상) 및 제13조(손실에 대한 보상)에 따라 이루어진 지급, 그리고
- (vi) 협정상 분쟁해결로부터 발생한 지급⁴⁰⁾

다만, 당사국은 일정한 경우 자국법 및 규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로 한-아세안 FTA에서는 아래가 규정되어 있다.

- (i) 파산·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 (ii) 유가증권·선물·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유통 또는 거래
- (iii) 형사 범죄
- (iv) 사회보장·공적퇴직연금 또는 강제적립기금
- (v)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판결의 준수 보장
- (vi) 고용계약해제
- (vii) 법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 그리고
- (viii) 과세⁴¹⁾

한편, 한-미 FTA와 한-싱가폴 FTA에서는 위 송금 연기 및 금지 사유 중 (iv), (vi), (viii)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한-인도 CEPA에서는 (viii)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⁴²⁾

40)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제10조 1항, 한-미FTA 제11.7조, 한-인도CEPA 제10.10조, 한-싱가폴 FTA 제10.11조.

41)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제10조 2항.

42) 한-미FTA 제11.7조 4항, 한-싱가폴FTA 제10.11조 3항, 한-인도 CEPA 제10.10조 4항.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에 있어서 자유롭고 지체 없는 송금의 보장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상대국의 국내법 체계나 사회보장 제도에 따른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한-아세안 FTA에서처럼 송금 연기나 금지 사유를 두명성 있게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4. 수용 및 보상

한-모로코 투자보장협정은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수용 및 보상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공공의 목적·적법절차 및 무차별원칙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국유화·수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지닌 기타 유사한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2. 그러한 보상은 수용이 행하여지기 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 중 보다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적용 가능한 상업적 이율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 없이 지급되고 효과적으로 실현되며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3.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의하여 당해 투자자의 산정에 대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에 의한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일방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시행되는 법에 의하여 설립·구성 되었으나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주식을 소유하거나 또는 다른 형태로 참여한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러한 형식의 규정은 우리가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우리가 체결한 FTA에서도 이러한 수용 및 보상원칙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은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수용 및 보상의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당사국은 다음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당사국의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 또는 수용 또는 국유화와 동등한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통하여 국유화 하거나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공공목적을 위할 것
 - 나. 적법절차에 따를 것
 - 다. 비차별을 기준으로 할 것, 그리고
 - 라. 신속하고 충분하며 유효한 보상을 지불할 것
2. 제1항 라호의 목적상, 보상은
 - 가. 수용이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수용이 발생한 때 중 적용 가능한 시점에서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격과 동등하다.
 - 나. 수용 의도가 미리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 다. 부당한 지연 없이 확정되고 지불된다. 그리고
 - 라. 당사국들의 영역간 효과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한 통화이다.
3. 제1항 라호에서 언급된 보상은 적절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보상은, 모든 발생된 이자를 포함하여, 수용 당사국의 통화로 또는 투자자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지불 가능하다.
4. 제1항·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공화국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경우, 토지와 관련한 모든 수용 조치는 그들의 개별적인 국내법·규정 및 그에 대한 개정에 정의된 바와 같고 수용의 목적 및 보상의 지불은 앞에서 언급한 법과 규정에 따른다.
5. 이 조항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⁴³⁾

여타 FTA에서도 공공목적의 비차별적 수용의무, 신속·적절·효과적인 보상, 보상에 있어서의 지연금지의 원칙, 보상금의 국제적 이전 가능 원칙 등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⁴⁴⁾

위에서, “수용(expropriation)”의 정의를 “직접적 또는 수용 또는 국

43)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제12조.

44) 한-칠레 FTA 제10.13조, 한-EFTA FTA 투자협정 제13조, 한-싱가폴 FTA 제10.13조, 한-미FTA 제11.6조.

유화와 동등한 조치(either directly or through measures equivalent to expropriation or nationalization)”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의 법리를 인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간접수용의 법리는 그 후 많은 투자협정이나 FTA에 도입되었으며, 한-미FTA도 ‘수용 및 보상’ 규정에서 “수용 또는 국유화에 동등한 조치(measures equivalent to expropriation)를 통하여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다.⁴⁵⁾ 한-미FTA 부속서 11-나에서는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간접수용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써, (i)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ii)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한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보, 그리고 (iii)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등을 제시한 후,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거친 후 판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⁴⁶⁾ 특히, “정부행위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즉, 환경보호를 위한 정당한 규제를 취한 결과 재산권의 상실이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간접수용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상의 의무도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다만, 미국 투자자에게 심하게 불균형적인 제한 효과가 발생하거나 차별적으로 규제가 취해지게 되면, 위 예외조항을 원용할 수 없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를 맺는 경우, 수용에 대한 보상의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간접수용의 법리를 숙지하여, 투자재산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화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간접수용 제도를 도입하고, 그 요건 및 제한사항들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므로,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유치하는 투자에 대해 이러한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반면,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하는 우리 자원개발투자기업들은 현지의 각종 규제조치로

45) 한-미FTA 제11.6조 1항.

46) Ibid., 부속서 11-나 3항.

인해 간접수용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투자 당지 예측하지 못했던 규제조치가 취해져 투자의 합리적 기대를 침해하는 식의 갑작스런 규제의 변경이 행해질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로부터 우리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간접수용의 범리를 FTA에 규정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다만, 공중보건, 안전, 환경 등과 같은 정당한 복지정책 규제에 까지 간접수용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규제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범위에서 간접수용 배제 사유를 확정하도록 협상해나가야 할 것이다.

5. 손실에 대한 보상

한-모로코 투자보장협정에서는 “전쟁,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항거, 반란, 폭동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경우,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기타 해결에 있어 비차별대우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 배상 지급액은 “신속, 충분, 유효하고(prompt, adequate, effective)” 자유롭게 송금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상사태 시에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재산의 징발이나 재산의 파괴”에 대해서도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부여할 것과 지급액의 지체 없는 송금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⁴⁷⁾ 한-인도 및 한-미 FTA에서도 이러한 “신속하고, 적절하며 유효한(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보상원칙이 확인되고 있다.⁴⁸⁾

이러한 손실보상 규정은 아프리카 지역의 자원개발대상국에 국내 정치가 불안정한 국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볼 때, 최소한 우리 투자자가 비상사태에 처해 손실을 입은 경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원칙에 입각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라는 점에서 아프리카국가들과의 FTA에 필수적인 조항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전쟁과 같은 국가의 공적 행위는 물론이고 시민소요와 같은 민간의 행위로 인해 투자 손실을 입는 경우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상의 정도와 관련, “충분하고 유효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협정이 단순히 비차별적

47) 한-모로코 투자보장협정 제4조.

48) 한-인도 CEPA 제10.13조, 한-미FTA 제11.5조 5항.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보상액수를 충분히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로 자원개발투자를 진행할수록 속지하여,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6. 자원개발 투자 분쟁 해결 절차

일반적으로 FTA는 대부분 정부간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우리가 맺은 FTA에서는 투자분쟁에 대하여 이러한 국가대 국가 분쟁해결절차와는 별도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적용대상 투자의 경영·영업·매각·처분과 관련하여, FTA 투자협정상의 일정한 의무(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투자에 대한 일반적 대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구성 제한 금지, 송금, 수용 및 보상, 손실보상) 위반으로 인해, 적용대상 투자나 그 투자자에 손실(loss) 또는 손해(damage)가 야기된 때, 당해 투자자와 당사국간에 일정한 중재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에 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 우리 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그 유치국의 법원에서 소송을 하자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투자자의 국적국인 우리 법원에 제소하게 되면 이번에는 투자유치국 입장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해결은 통상 국제중재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중재는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한 당사자간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점차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 주된 이유로는 중재기관, 중재규칙 및 중재인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판정주체의 전문성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기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를 상호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기대할 수 있으며, 송달에 있어서 중재가 소송보다 편리하며, 판정의 집행측면에서도 중재의 경우 뉴욕협약이 있어 협약에 따라 집행이 보장된다는 점 등이 중재의 커다란 장점이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 투자자-국가 중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이해할 수 있다.

투자자-국가 중재 청구의 대상요건과 관련하여,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은 투자협정상의 일정한 의무 위반에 한해 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한데 반해,⁴⁹⁾ 한-미 FTA의 경우는 협정상의 의무 위반에 더해 투자인가(investment authorization)나 투자계약(investment agreement)상의 의무 위반의 경우까지 청구의 대상요건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와 투자인가를 받거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진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압적 투자인가와 투자계약상의 의무 위반의 경우까지 청구 대상요건화해야 우리기업들의 보호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분쟁투자자가 그의 권리 및 이익의 보전을 위하여, 중재판정부에서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 재판소에서 손해배상의 지급 또는 분쟁사안의 실체적인 해결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잠정 보호조치(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를 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도 우리 기업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의 잠정적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의 해외자원 개발투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 협정상의 제소 요건 및 조건 그리고 절차에 따라 적당적이고 유효한 공격과 방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49) 한-싱가폴 FTA나 한-칠레 FTA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한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IV. 결 론

아프리카 지역의 자원개발 투자에 있어, 국제법적인 권리와 의무관계에 따라 투자기업과 투자유치국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투자분쟁을 방지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자원개발투자가 정치적 경제적 함수관계에 의해 좌우되게 되고, 국제법적 안정성을 결여하게 되면, 그만큼 불안정해지고,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국내법적 계약관계에 맡겨지게 되면, 아프리카 지역의 해당 국가의 자의적 사법제도의 운영과 판결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우선,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맺는 FTA에서 자원에너지 분야 협력조항을 마련하여, 기본적인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협력의 원칙과 우선협력 분야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협력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아프리카 국가들이 EU와의 협력협정에 규정한 자원에너지 협력 관련 조항을 검토할 때, 아프리카 현지의 에너지 접근성 개선, 관련 산업부문 현대화, 보건·안전·고용조건 개선, 호혜적 투자환경 조성 등의 협력사업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차원에서 각종 협력사업을 전개할 것임을 규정하는 식으로 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달성하려는 목표인 에너지 공급선의 확보와 현지 투자기업들의 보호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향하는 인프라 구축 목표들 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협력의 목적 조항을 마련한 후, 우리측이 우선시하는 사업들인 석유와 가스 공동개발, 무역 및 투자 촉진, 민간부분간의 제휴활성화 등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우선협력분야인 인프라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지 인력 훈련, 입법 지원 등을 조화롭게 규정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에 자원개발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체제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면서 투자의 과실을 장기적으로 취하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자원개발 투자 자체의 보호를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에 투자보호를 위한 장(chapter)을 규정하고 각종 보호 의무와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맺은 FTA에서는 사전 투자자도 보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FTA에서도 사전 투자단계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자원개발 투자 및 투자자가 투자유치국내에서 비차별대우를 받고, 공정·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보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 이익의 송금 및 투자유치국의 수용행위에 대한 적정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비상사태 시 발생한 투자손실에 대해 보상이나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양측의 정당한 사정을 고려하여, 최혜국대우의 예외사유, 간접수용에 대한 예외 등을 세심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반드시 협정상 명시된 권리의 침해가 아닐지라도 우리투자자가 아프리카 투자유치국 정부와 맺은 각종 투자계약상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FTA 투자협정에 따른 보호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자원개발 투자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절차로서 투자자-정부간 중재절차를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해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많은 수의 주요 자원개발 투자 대상국과 이미 양자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또 FTA체결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므로, 앞으로 아프리카 지역에도 자원개발투자의 보호를 위해 포괄적인 실체적·절차적 투자보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자원주권주의 열풍이 몰아치고 모든 나라의 이해관계가 침범하게 대립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리 자원개발체제의 평화와 안정을 항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FTA를 통한 자원개발 협력과 투자보호 체제 마련은 필수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 참 고 자 료 >

1. 한국이 맺은 FTA 문안

- 한-칠레 FTA (2004.4.1 발효)
- 한-싱가폴 FTA (2006.3.2 발효)
- 한-EFTA FTA (2006.9.1 발효)
- 한-ASEAN FTA (2007.6.1 상품부익협정 발효)
- 한-인도 CEPA (2010.1.1 발효)
- 한-EU FTA (2011.7.1 잠정발효)
- 한-페루 FTA (2011.8.1 발효)
- 한-미 FTA (2007.6.30 서명)

2. EU와 아프리카 국가간 협력협정 문안

- Algeria - EU Association Agreement (2005.9.1 발효)
- Egypt - EU Association Agreement (2004.6.1 발효)
- Morocco - EU Association Agreement (2000.3.1 발효)
- Tunisia - EU Association Agreement (1998.3.1 발효)
- South Africa - EU Economic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2000.1.1 발효)
- Cameroon - EU Interim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009.9.24 발효)
- Ivory Coast - EU Interim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009.3.3 발효)

3. 한국이 아프리카/아시아 국가와 맺은 주요 양자투자협정 문안

- 한-리비아 투자보장협정 (2007.3.28 발효)
- 한-모로코 투자보장협정 (2001.5.8 발효)
- 한국-우크라이나 투자협정 (1997.11.3 발효)
- 한국-인도네시아 투자보장협정 (1994.3.10 발효)
- 한국-인도 투자보장협정 (1996.5.7 발효)
- 한-이집트 투자보장협정 (1997.5.25 발효)
- 한-나이지리아 투자보장협정 (1992.2.1 발효)